

의안번호	2203630
의 퇴 인	한정애의원
회 답 일	2024. 10. 11.
추 계 번호	24D335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의2(대통령선물의 관리) 신설	– 동물 또는 식물등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 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의2(대통령선물의 관리)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대통령선물이 동·식물의 이관 관리 시 물품·비용지원(안 제7조의2)

- 개정안은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리되었고, 대통령선물이 동·식물인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다른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은 해당 기

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였으나 현재 관리 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있음

[표 1] 대통령선물 중 동·식물 관리현황

시기	대통령	계기	선물	이관기관
1994년	노태우	한중수교	백두산호랑이 한쌍	서울대공원
2000년	김대중	북한방문	풍산개 한쌍	서울대공원
2005년	노무현	방중기념	호랑이 한쌍	광릉수목원
2010년	이명박	러시아 방문	호랑이 한쌍	서울대공원
2014년	박근혜	인도 방문	보리수나무	광릉수목원
2022년	문재인	남북정상회담	풍산개 한쌍	우치동물원

자료: 대통령기록관

-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식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재정의 지원 범위 및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예슬	02-6788-4831	zisu37@nabo.go.kr